

2012. 4. 25.

##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77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78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9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80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1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82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83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최근배 의원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경제과장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기업지원과장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도로과장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건강증진과장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건강증진과장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2012. 4. 9.	2012. 4.10.	2012. 4.16.	2012. 4.16.	과수연구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가의 재정자금 기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 지원을 신설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4]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업체 보호시책 추진을 통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5]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부훈령」 제29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12.16일 폐지됨에 되어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6]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진료수가조례」 제8조에 준하는 진료비 감면내용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 ⑦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두며, 이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안 제15조의2 신설)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 지정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나.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노력(안 제15조의2 제2항 신설)

#### ②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료 등 80% 감면(안 제36조의2)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6조의3)

### **[3]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신설 (안 제12조)
- 나. 공장 신설, 증설시 설비투자 지원 (안 제22조)
- 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 신설 (안 제25조)
- 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6조)
- 마.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 (안 제31조)

### **[4]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가.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비율 비율 명시(안 제3조 제4항)
  -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 나. 민자사업 및 지역자재, 지역장비 참여 권장(안 제3조 제5항)
  - 지역 민자사업의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권장
  -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건설장비를 70%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 **[5]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자문기능 추가(안 제4조 제2항)
- 나. 운영위원 인원 축소(안 제5조 제2항) : 20명→ 11명
- 다. 사무장을 두는 규정 삭제(제7조)
- 라. 협의회의 재정 변경(안 제9조 제1항)

## **[6]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2조)
- 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삭제(제3조)

## **[7]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 가. 기능 및 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나. 미생물 신청 및 공급, 공급의 제한(안 제8조, 안 제9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전국 처음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임.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업체가 모여 만든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1조의 2항에 대해 위현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여, 현재 현법 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음.(현법재판소 2012 헌마 252)

또한, 각계 시민단체에서는 위헌 소송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2]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 18조에서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8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별법 및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감면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특별법 제19조에서는 시장 상인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의 조례 위임에 따라 주차료를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본 조례의 해당 부서인 경제과에 문의결과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은 특별법에 의거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36조의3을 해석하면 「충주시주차장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충의, 충주천공영주차장 등 대다수의 공영주차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 조항을 경제과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3]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변경된 지원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22에서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설 공장에 대해 최고 3억원, 중설 공장에 대해서는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1조에서는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2억으로 대폭 상향 하고 있음.

이렇듯, 투자유치보조금의 지원 범위 확대와 투자유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이행 의무를 확보한 것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4]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구매,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22)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임.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하는 것은 비록 권장사항 이기는 하나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 의결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간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에 의거 독립채산

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으로 진료소가 운영되며 운영협의회의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될 예정임.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⑥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진료비 기준을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⑦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 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음.(「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친환경농업은 환경보호 측면 뿐 아니라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FTA로 인한 저가의 수입 농산물에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고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간 2008년부터 친환경미생물을 농가에 공급(다음장 참고) 하고 있으며 구체역 매몰지 2차 환경오염에도 사용한 예가 있음.

2011년 기준 농가공급 미생물양은 7,937리터로 1리터당 1만2천원으로 계산(농가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EM제품, 1㎖당 생균수 $10^8$  기준)하면 농가에서 수혜를 받은 금액은 약 9천5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금년에는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양실을 새로 신축하고 매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조례안 제5조의 사업 목적에 맞게 합성 농약을 대체 할 수 있는 농약대용사업의 연구수행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5. 질의답변 요지

###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충주에 대규모점포 및 SSM은 몇 개인가?

답변 : 대규모마트 2, 준대규모점포 2개소임.

(2) 질의 : 위헌 소송에 대한 대응은?

답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임.

(3) 질의 : 조례 개정을 헌법재판소 판결 후 할 용의는?

답변 : 전국적인 사항으로 일단 시행 후, 현재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 농협, 원협 마트는 규모가 대규모점포 수준인데?

답변 : 농수축산물 매출이 51% 이상으로 적용 제외임.

(5) 질의 :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얼마나 되나?

답변 : 도내는 청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제천은 준비중임.

### ②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주차장 무료는 어떻게 운영 예정인가?

답변 :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시간 제한을 둘 예정임.

(2) 질의 : 이 조례에 의한 우리 지역의 시장은 몇 개소인가?

답변 : 11개소임.

(3) 질의 : 풍물시장 개최 시 외지인이 80%라고 하는데?

답변 : 충주시민이 60%고 외지인이 40%임.

### **[3]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 답변 없음.

### **[4]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조례안 같이 정한 근거는?

답변 : 지역업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함.

(2) 질의 : 하청업체의 기술 자격 기준은?

답변 : 공종별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줌

(3) 질의 : 원청업체의 수수료가 너무 큼.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답변 : 계약이 행합의서를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 **[5]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운영협의회의 개최실적은?

답변 : 상, 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개최됨.

(2) 질의 : 협의회에서 건의하여 반영한 사항은?

답변 : 건의사항은 주로 신축에 관련한 내용으로 반영했음.

## ⑥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답변 없음.

## ⑦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1) 질의 : 충북도 내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갖춘 지자체는?

답변 : 도내 전 시군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례는 제천에서 시행중임.

(2) 질의 : 하수처리장 등에도 오염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현재까지는 농업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수질환경 쪽은 아직 연구하지 않은 분야임.

(3) 질의 : 현재 있는 배양시설과는 어떤 차이인지?

답변 : 현 시설은 축산 배양물 시설이고, 신축은 농업분야임

(4) 질의 :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소량 포장하여 농가에게 시중보다 싼 가격에  
유상 공급할 용의는?

답변 : 전국적으로는 50:50정도임. 유상의 경우도 친환경  
농업의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유상공급의 경우 공정거래, 기존 업체의 반발 등  
여러 문제가 있음.

##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③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붙임 1.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1부.

#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6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충주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